의 안 번 호	제	ই
의 결	20 .	
연 월 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택 시 운 송 사 업 의 발 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,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,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・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거리실차율: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말하고, 현재 거리실차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현재 거리실차율 = (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 × <u>개인택시 보유대수</u>) +

 $(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 <math>\times \frac{9반택시 보유대수}{전체택시 보유대수})$

다. 시간실차율: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을 말하고, 현재 시간실차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총 운행시간 조사의 부정확 등으로 시간실차율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호의 계산식에서 시간실차율을 생략하고, 거리실차율에 적용하는 가중치 0.8을 1.0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현재 시간실차율 = (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 × 개인택시 보유대수) +

(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 × 일반택시 보유대수 전체택시 보유대수)

- 라. 가동률: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를 말하고, 현재 가동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 - 1) 현재 가동률

2)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부제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산정하고, 안정적 가동률로 나눈 값을 보유대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며,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.

마. 목표 거리실차율,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은 택시운송 사업자의 적정수입과 이용객 수요 등 택시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

연 락 처

(044) 201 - 4757